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보고서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740
결재일자	2015.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재개발1팀장	주거정비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문연결	조영두	소순면	윤호중	11/30 이비오
협 조				
	구민고충민원실장		신환창	

민원사항

- 번 호 : 1815, 1816, 1819, 1820, 1821, 1822
- 상담인명 : 김○○, 강○○, 김○○, 이○○, 공○○, 김○○
- 처리기한 : 2015.11.30. (등록일자 : 2015.11.24.)
- 민원유형 : 시정요구형 (수용)
- 제 목 :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임시총회 불법성 관련하여
- 내 용 : 왕십리뉴타운1구역 조합 임시총회 위법성 확인요청
 - ‘15’11.21.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은 서면 결의서 및 철회서 수령을 거부하였고, 철회서를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과반수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안건이 가결되었음
 - 임시총회 개최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답변내용

○○○님 안녕하세요?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5.11.21. 임시총회 개최과정에서 조합의 위법사항 등에 대해 구청에서 확인을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원만하지 못한 조합 임시총회 과정에 대한 조합원님들의 우려와 고충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이 말씀하신 임시총회 위법성에 대해 담당부서로 하여금 관련 내용을 확인, 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살펴본바 서면결의서 및 철회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과반수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가결시키는 등 총회 진행에 문제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을 구청으로 래방토록 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조합장은 금번 조합 총회는 적법하게 이루어 졌으니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조합과 민원인들과의 주장이 첨예하게 상충됨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원 총회는 조합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행정청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님께서 말씀하신 서면결의서 및 철회의 적법, 유효여부는 관련법 및 조합 운영규정에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안은 구청의 감독권이 제한 받을 수밖에 없고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사오니 공람기간 중 이의 신청, 증거확보를 통한 사법적 판단 등 별도의 방법으로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성동구청장 정원오 드림

■ 처리부서 : ☎2286-6566 주무관 문연걸 재개발1팀장 조영두 주거정비과장 소순면